

의안번호	제3102호
의결	2026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4. 24.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0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4. 2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전국 시·군·구 위원 명칭 구체화 및 단일화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(안 제3조제5항제7호)

- (기존)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고성지역 수사관
- (변경)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제2호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0169(2026. 3. 5.)호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530호
 - 가) 예고기간: 2026. 3. 10.~2026. 3. 30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고성지역 수사관</u></p> <p>8. ~ 13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</u>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이 형 호

□ 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~⑧항 생략